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장수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16
----------	-----

제출년월일 : 1998. 6.

제출자 : 중구청장

1. 제안이유

- 국민건강증진법 제35조제1항에 의거 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코자 할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에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 본 조례 제3조에는 "청문"이라는 제목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상위법령의 규정과 조문의 제목을 이치시키고자 하며
- 또한 98. 1. 1부터 시행하고 있는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이라는 용어와 혼돈방지를 위하여 본조례를 개정코자 하는것임.

2. 주요골자

- 조례 제3조의 제목"(청문)"을"(의견진술 등)"으로 개정

3. 근거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 및 제35조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과태료의 부과)제2항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대비표 : 붙임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청문)”을 “(의견진술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 표

현 행

제3조(청문)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생략)

개정안

제3조(의견진술 등)

② (현행과 같음)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16호)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등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98. 6. 23

나. 제출자 :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다. 위원회회부 : '98. 7. 15

라. 위원회상정 : '98. 7. 23

3.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보건소장)

○ 조례 제3조의 제목 “청문”을 “의견진술”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절차법상의 “청문”이라는 용어와 혼돈을 방지하기 위함임.

4.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 강진상)

○ 행정절차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도 청문과 의견 진술을 명백히 구분하고 있으므로, 상위 법령과 용어를 일치 시키고자 본 조례 제3조의 제목인 청문을 의견 진술로 개정함은 타당한 것임.

5. 심사결과 : 원안가결